

예산총칙

2022년도 【본예산】

* 제1조 :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664,857,009	19,945,710
일반회계	계	596,034,901	17,881,047
특별회계	계	68,822,108	2,064,663
	공기업특별회계	20,289,144	608,674
	지방상수도사업	20,289,144	608,674
	기타특별회계	48,532,964	1,455,989
	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1,072,228	32,167
	의료급여사업	993,072	29,792
	농공단지조성사업	177,040	5,311
	중소기업육성기금사업	4,602,000	138,060
	일반산업단지조성	1,938,590	58,158
	하천골재채취근직영사업	435,991	13,080
	농업발전기금	530,000	15,900
	수질개선사업	38,784,043	1,163,521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* 제3조 :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

* 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5,876,909천원으로 한다.

* 제5조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6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